

EY한영 월간 Public Policy Newsletter

2026년 1월호

발행일 | 2026년 1월 30일

In Focus

- + 국회, 흩어진 회계기준 한데 묶는 '회계기본법' 발의...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소속 '회계정책위원회' 신설 방침 [\(바로가기\)](#)
- + 금융당국, 기업공시개선안 발표...영문공시 확대하고 주주총화임원보수 공시도 강화 [\(바로가기\)](#)
- + 금융위금감원,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추진...매년 12월 '이행 여부 점검결과' 공개 [\(바로가기\)](#)
- + EU,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 입법 마무리 수순...CSRD-CS3D 규제대상 대폭 축소 [\(바로가기\)](#)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Contents

01	국내 업데이트	3
	1. 회계감사제도 및 기업회계기준	
	▪ 국회, 흩어진 회계기준 한데 묶는 '회계기본법' 발의...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소속 '회계정책위원회' 신설 방침	4
	▪ 금감원, '26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도 사업보고서에 공시 요구	5
	▪ 최종경 전 지식경제부장관, IFRS 재단 이사로 선임	6
	2. 자본시장	
	▪ 금융당국, 기업공시 개선안 발표...영문공시 확대하고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도 강화	7
	▪ 금감원, 더 상세한 '기업 배당 정보' 공시 요구...배당정책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결산·분반기 배당 구분 기재	8
	▪ 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 및 제재 선진화 착수... '피조사자 방어권' 강화 논의	10
	▪ 금융위, '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	11
	▪ 기재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징역 대신 과징금 10배	12
	3. ESG·지속가능성	
	▪ 금융위·금감원,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추진...매년 12월 '이행 여부 점검결과' 공개	14
	▪ 거래소, '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분석 결과 발표...공시 기업 전년 대비 10% 늘어	15
	4. 기술·디지털	
	▪ 과기정통부, 'AI 보안 안내서' 발표...개발부터 이용까지 113개 수칙 제시하고 보안 위협 실사례도 설명	16

02 해외 업데이트 17

1. 해외 일반

- Accountancy Europe, 유럽 회계업계 외부자본 유입 확대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 분석 18

2. ESG·지속가능성

- EU,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 입법 마무리 수순...CSRD·CS3D 규제 대상 대폭 축소 21
- ISSB,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 개발 방침...올해 10월 초안 공개 목표 23
- IPSASB, 정부를 위한 '공공부문 기후 공시기준' 1호 승인...'28년 시행 24
- IMO, 탄소부과금 채택 논의 1년 연기 결정...트럼프 대통령 반대 부딪혀 24
- 중국, 기업 지배구조 지침 업데이트...이사·고위경영진 감독 강화 25
- IAASB, 'ISSA 5000' 적용한 지속가능성 예시 인증 보고서 공개 25

3. 기술·디지털

- 호주, 회계사에 AI 활용 관련 주의당부...윤리기준 준수 및 AI 사용 사실 공시 요구 26
-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EU 등 전 세계적으로 SNS 연령 제한 도입 움직임 확산 27

03 주목할 간행물 29

01

국내 업데이트

국회, 흩어진 회계기준 한데 묶는 '회계기본법' 발의...컨트론타워로 국무총리 소속 '회계정책위원회' 신설 방침 In Focus

2025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영리, 비영리, 공공 부문에 공통으로 적용될 회계 분야의 기본법인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함. (본 뉴스레터 2025년 2월호 '한공회,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영리·비영리법인 일관된 회계 정책 필요성 강조' 참고)

이 법안은 다양한 법인 등이 준수해야 할 회계의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공시·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개별 법률 역시 이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배경

- 현행 회계 관련 법령은 주무부처 및 법률별로 흩어져 있어 운영상의 비효율성과 감독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
- 2024년 12월 한국회계학회가 한국공인회계사의 후원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다룬 바 있으며, 이후 회계기본법 제정은 제21대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포함된 바 있음.

조직 유형별로 상이한 회계제도 현황

	회계 근거 법률	주무부처
영리법인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법무부, 금융위원회
중앙정부	국가회계법 및 시행령 등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회계법 등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기획재정부
종교법인	N/A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교육부
학술장학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예술문화법인	N/A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의료법인	의료법	보건복지부

자료: 회계기본법 심포지엄 연구진 발표 영상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며, 분산된 회계 정책과 감독 체계를 통합·조정하기 위해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부여될 방침임.

회계정책위원회 권한

-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 심의·의결
- 법인 등의 회계처리기준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수정 요구
-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관계 법령·제도 개선 요청 등

» 다음 페이지에 계속

박찬대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공청회'에서 단체의 유형에 따라 회계 규정이 달라 혼선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회계기본법"이라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회계 질서를 만드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표](#). 한편, 1월 27일에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도 별도의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함.

금감원, '26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도 사업보고서에 공시 요구

2025년 12월 16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6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도 기재해야 함. (본 뉴스레터 2025년 11월호 "금감원장, 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최...컨설팅 법인이 수행한 비감사용역도 공시 의무화 방침" 참고)

네트워크 회계법인에는 '감사인과 별개로 운영되더라도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이 포함됨.

배경

- 2024년 12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네트워크 회계법인' 정의가 국제윤리기준과 동일하게 개정됨.

개정 전 정의	개정 후 정의
통제와 소유 또는 경영의 통일성에 있어 당해 회계법인이 그 회계법인의 일부라고 판단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나 경제적 실체	-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대규모 조직 - 이익공유 또는 비용분담 - 공동의 소유와 통제 또는 경영 공유 - 공통의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 공유 - 공통의 사업전략 공유 - 공통의 브랜드 명칭 공유 - 전문자원 중 상당 부분 공유

- 이에 따라 개정 후 정의에 부합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독립성 준수 의무가 발생함.

이를 위해 관련 공시서식이 개정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즉, 회사가 2025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부터 공시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음.

공시 대상이 되는 비감사용역

- 회계감사인인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당기에 수행한 비감사용역 현황 (최근 3년간의 정보 기재¹)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소재한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포함
 -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하도급 계약도 해당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시 관련 기재사항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금감원이 마련한 공시 대상 범위 등에 대한 '공시 서식 관련 FAQ'를 [공개](#)함.

금감원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감사대상회사에게 제공하는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감사인이 외부감사 업무 수행 시 독립성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 IFRS 재단 이사로 선임

2025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이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됐다고 [발표](#)함.

최중경 신임 이사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6인의 이사 중 한 명으로 선임되어 올해 1월부터 3년간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이번 선임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로 한국 인사가 4차례 연속 배출됨. 금융위와 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한국 자본시장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힘.

¹ 공시 대상은 당기에 수행한 비감사용역의 3개년 내 관련 정보이며, 전기 또는 전전기 중 제공이 종료된 비감사용역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

금융당국, 기업공시 개선안 발표...영문공시 확대하고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도 강화 In Focus

2025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를 확대하고 주주총회 결과, 임원보수 공시 등을 강화하는 '기업 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함.

배경

- 우리나라 기업공시제도는 기업정보에 대한 국내외 수요 증대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음.
 - 2024년 1월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¹의 중요정보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화(1단계)
(본 뉴스레터 2024년 1월호 "금융위,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안내...1월 1일 시행" 참고)
 -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전환사채, 자사주 등과 관련된 공시항목 및 내용 지속 확충 (본 뉴스레터 2024년 11월호 "금융위, 전환사채 제도 개선...12월부터 "콜옵션 누가 행사할 수 있나" 명시적으로 밝혀야" 및 2025년 10월호 "금융위,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 방침...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 입법예고" 참고)
- 그러나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주주권 행사를 위한 정보 제공 등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영문공시 의무화 2단계('26.5.1.~)

구분	현행(1단계)	개정(안)
의무대상 확대	•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	•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공시항목 확대	• 거래소 공시 중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	•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
제출기한 단축	• 거래소에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 영문공시 제출	• 자산 10조원 이상: 국문공시 제출 당일 • 자산 2조원 이상: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

또한 재정경제부가 2026년 1월 9일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에 따르면, 영문공시 의무화 3단계로 내년 3월부터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적용 대상 법인을 코스닥 대형사(예: 자산 2조원 이상)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자산 10조원 이상이며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이며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

2. 정보 제공 확대 등 주주권익 제고('26.3.1.~)

구분	현행	개정(안)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강화	-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 여부만 공시 - 찬성률 등 표결 결과는 미공시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 의무화
주주총회 분산개최 유도	상장사의 약 90%는 주주총회 3월 하순에 개최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해 인센티브 강화
임원 보수공시 강화 (‘26.5.1. 시행)	- 기업성과와 보수 간 관계, 보수 산정근거 등의 공시 미흡 - 주식기준보상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임원 보수 공시 서식에 포함되나, 그 외 주식기준보상¹은 기업 전체 또는 대주주 부여 현황으로 별도로 공시되며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은 미공시 -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수량만 기재	-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고 보수내역별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 - 주식기준보상 - 임원 전체 보수총액, 개인별 보수 공시 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 -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까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규정변경예고가 [실시](#)됐으며, 개정 규정은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임. 영문공시 의무화 2단계 시행 등을 위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개정예고도 12월 16일까지 실시됨.

금감원, 더 상세한 '기업 배당 정보' 공시 요구...배당정책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결산·분반기 배당 구분 기재

2025년 12월 5일 금융감독원이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과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안내](#)함.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사업보고서 내 배당 관련 기재사항을 점검한 결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하거나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공시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는 것.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예: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Restricted Stocks, RS): 근속연수나 성과 달성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양도 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배경

- 2023년 1월 금융위원회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해 기업들의 배당절차 개선을 유도함. (본 뉴스레터 2023년 1월호 “금융위,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이르면 내년부터 배당액 확인 후 투자 가능” 참고)

구분	기존	개선
	배당받을 주주 먼저 확정 → 배당액 확정	배당액 먼저 확정 → 배당받을 주주 확정
결산배당 상법 제354조 법무부 유권해석 (‘23.1월 배포)	-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12월 말일을 ‘주총 의결권 기준일’이자 ‘배당 기준일’¹로 정함 - 이미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된 후인 다음 해 3월 정기주총에서 배당 여부 및 배당액이 확정됨	- 기업이 정관 개정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유도함 - 이 경우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이 결정되고 난 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됨
상장사 분기배당 자본시장법 개정 (‘24.12월 개정)	- 상장회사는 3·6·9월 말일이 배당 기준일 - 그로부터 45일 이내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하여 배당할 수 있음	3·6·9월 말일 현재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함 - 따라서 기업은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 관행이 실제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배당을 실시해야 하므로, 금감원은 2024년 12월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 기재항목으로 신설함. (본 뉴스레터 2025년 1월호 “금감원, 배당절차 개선 촉진 위해 사업보고서 개정...배당금 먼저 확정했는지 여부 공시 필요” 참고)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과 같이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함.

구분	현행	개정
배당정책	별도 항목 구분 없이 기재	- 다음의 소항목으로 구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 ① 배당목표 결정 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②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③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다음 소항목별로 기재 ①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² ②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 기준일 지정 현황³ ③ 기타 참고사항	소항목 ①, ② 작성 시 결산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

금감원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당 관련 기재사항을 충실히 작성할 것을 당부함.

¹ 배당받을 주주들이 누구인지 확정하는 일자

²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정관상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관련 향후 계획

³ 결산 월, 배당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 기준일,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 및 제재 선진화 착수... '피조사자 방어권' 강화 논의

2025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위원회포럼 등 업계 대표, 학계·법조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TF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로, 특히 조사·제재 절차 전반에 걸친 피조사자의 방어권 강화도 중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짐. (본 뉴스레터 2025년 9월호 "금융위, 증선위 3대 중점 운영방향 발표...내년 상반기 '회계부정 엄정 제재' 시행 시 과징금 회사 1.5배·개인 2.5배 증가 예상" 참고)

이번 회의에서는 피조사자 방어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행 제재 시스템의 경직성과 절차적 미비점이 지적되었으며 대안도 제시됨.

상장협·코스닥협회

-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는 현실 지적
- 제재의 선진화 필요성 강조
- 피조사자에게 보다 충실한 소명 기회 보장 제안

한국공인회계사회

-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
-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과정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해줄 것 요청

정부는 향후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누어 올해 상반기까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임. 또한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 감리,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금융위, '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

2025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함. 이 중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자기주식 공시 제도 개선 ('25.12.30. 시행)

- 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1% 이상¹의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 연 2회² 공시
-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 경우, 그 사유를 공시

중대재해 공시 강화 ('25.12.30. 시행)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 공시 의무화

임원보수 공시 강화 ('26.3.1. 시행)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작성 시, 총주주수익률(TSR) 및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 ('26.5.1. 시행)

-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이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손익계산서 개편 ('27년부터 적용, '26년 조기적용 가능)

- K-IFRS에 따른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이 '영업/영업외손익'에서 '영업/투자/재무 손익'으로 변경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 외에도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 ▲서민 금융부담 감소, 소비자 보호 강화 ▲국민 일상에 도움이 되는 금융 등에 중점을 둔 다양한 금융제도 시행을 안내함.

¹ 기존: 5% 이상

² 기존: 연 1회

기재부,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징역 대신 과징금 10배

2025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잉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함.

배경

- 지난해 8월부터 정부는 기업 활동이나 경제 질서와 관련된 범죄에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는 '경제형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함. (본 뉴스레터 2025년 8월호 "기재부,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TF 가동...고의·중과실 아니면 사업주 형사책임 완화하고 재산상 책임 강화 방침" 참고)
- 이후 지난해 9월 전 부처 소관법률 중 형벌 관련 규정 30%를 1년 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¹한 바 있음.

이번에 발표된 2차 방안에서는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 경제 부담 완화라는 3대 정비 방향을 중심으로 각각 다음을 포함한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함.

정비 방향		개선과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 대폭 강화	
	현행	vs.	개선
금전적 책임성 강화	• (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자가 타사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할 시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 + 정액과징금 (현행 최대 5억원→50억원)
	2년 이하 징역	▶	
	• (하도급법)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았으나 하청업체에게는 미지급할 시		시정명령 미이행 시: 벌금 + 정액과징금 (현행 최대 20억원→50억원)
	하도급대금 2배 이내 벌금	▶	
	• (가맹사업법) 가맹점 본사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¹ 이내 가맹계약 체결 시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 + 정액과징금 (현행 최대 5억원→50억원)
	2년 이하 징역	▶	
	• (대리점법)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할 시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 + 정액과징금 (현행 최대 5억원→50억원)
	2년 이하 징역	▶	
	• (위치정보법)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시		정액과징금 (현행 최대 4억원→20억원)
	1년 이하 징역	▶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가맹희망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받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숙고기간

정비 방향	개선과제
	사업주의 고의가 아니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인 경우, 형벌 완화 또는 과태료로 전환
	현행 vs. 개선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금융투자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시 1년 이하 징역 ▶ 과태료 3천만원 • 그 외 대기환경보전법, 비료관리법, 자동차관리법, 관광진흥법에서 개선과제 도출
민생경제 부담 완화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인 경우, 형벌 대폭 완화 • 자동차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자연공원법, 동물보호법, 무인도서법, 식품위생법에서 개선과제 도출

기재부는 2차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도록 협조해 나갈 방침임.

또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하여 경제 형벌 합리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금융위·금감원,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추진...매년 12월 '이행 여부 점검결과' 공개 In Focus

2025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한국ESG기준원 및 관계부처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함.

앞서 금융위원회는 같은 달 22일 개최한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배경

-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에 민간 자율규범으로 도입되었으며, 2025년 12월까지 9년에 걸쳐 4개 연기금¹, 63개 자산운용사 등을 포함해 249개 기관투자자 등이 참여하고 있음.
- 도입 이후 반대 의결권 행사 안건 비율 상승²이나 주주제안 증가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참여기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가 없고, 결과 공시가 미흡하며,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간의 경제·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번 내실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³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이행점검 절차' 도입

- 위원회가 이행점검 결과 최종 의결: 참여기관이 12개 이행점검 항목에 대해 자체 작성한 보고서 실무 점검 → 그 결과를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의결해 매년 12월 결과보고서 공개
- 이행점검 대상 단계적 확대: ('26년) 자산운용사·연기금(총68사) → ('27년) PEF운용사보험사 추가(총145사) → ('28년)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 추가(총157사) → ('29년) VC·서비스기관 등 전체(총249사)

2. 이행점검 결과의 공시 및 활용 확대

- 정보 접근성 확대: 참여기관의 자체 작성 보고서를 자사 홈페이지 이외에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도 게재
- 참여기관별 비교 가능성 개선: 이행점검 항목별로 참여기관의 이행 여부를 쉽게 비교한 종합보고서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
- 가입기관의 코드 이행 유도: 모범사례·우수기관 발굴, 이행점검 결과를 연기금(자산소유자)와 공유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² '16.3월: 1.84% → '24.3월: 4.59%

³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등을 담당하는 민간 위원회 (한국ESG기준원 위촉 및 실무지원)

3. 코드 개정을 통한 글로벌 정합성 제고

- 수탁자책임 이행 시 고려사항 확대: 지배구조 외에도 환경, 사회 등의 ESG 요소 전반 추가
- 수탁자책임 이행 형태 확대: 투자 대상에 대한 주주활동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 선정'도 포함
- 적용 대상 투자 확대: 상장주식 외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한 주요국의 개정 사례를 참고하여 개정안 검토·마련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이 주주총회 등 주주활동에 있어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은 올해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임.

거래소, '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분석 결과 발표...공시 기업 전년 대비 10% 늘어

1월 5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2025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자율공시 분석 결과 및 보고서 작성 모범사례를 [발표](#)함. 거래소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225사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공시 기업 수가 매년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시 기업 수

- 2021년 78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은 2024년 204사에서 2025년 225사로 약 10% 증가함

공시 기업 유형

- 자산 2조원 이상, 시총 10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법인일수록 공시비율이 높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 금융·보험업의 공시비중이 높음

기후 분야 공시

- 공시 기업의 95%가 기후변화의 위험 및 기회요인을 식별하여 공시해, 전년(79%) 대비 16%p 상승
- 위험·기회요인의 양적 재무영향 분석(17%) 및 시나리오 분석(38%)을 이행한 기업 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재무적 영향도 분석 및 구체적인 대응 전략 제시는 여전히 미흡
- 대부분의 기업이 스코프 1·2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했으나, 연결기준 공시 기업은 1%에 불과
- 상당수 기업(68%)이 스코프 3 배출량을 공시했으나, 배출량의 신뢰도나 비교가능성은 여전히 부족

거래소는 기업의 ESG 공시역량 강화 및 국내 ESG 공시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ESG 공시 관련 세미나 및 기업 대상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기업 측 애로사항이 국내 ESG 공시제도 마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힘.

과기정통부, 'AI 보안 안내서' 발표...개발부터 이용까지 113개 수칙 제시하고 보안 위협 실사례도 설명

2025년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외부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인공지능 모델 및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113개의 보안 요구사항을 담은 '인공지능(AI) 보안 안내서'를 [발표](#)함.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AI 보안 정책 관련 사례 등을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AI 모델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보안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힘.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

- AI 대전환(AI Transformation, AX)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국가 경제와 사회 전 영역에서 AI 기반 서비스 도입이 확대됨.
- 그간 정부는 AI 생성물, 추론 과정 등에 대한 지침 등을 발간해 왔으나, 외부 사이버 위협을 예방 및 대응하는 보안 관점에서의 상세한 가이드 또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음.

총 1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안내서는 개발자(제2장)와 서비스 제공자(제3장)를 대상으로는 AI 모델 및 시스템의 설계부터 개발, 운영, 배포, 유지보수, 폐기 등 생애주기 전 단계¹에 걸친 다양한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한편, 이용자(제4장)에게 실제로 발생한 보안 위협 사례² 설명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이용자의 보안 수칙도 제시함.

이번 보안 안내서는 국제 기준 및 방침(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인공지능 보안 요구사항을 세계적 수준으로 정립함으로써, 국내 모델뿐만 아니라 해외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과 국제규범 간 호환성을 확보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보안 위협을 점검·반영하는 등 안내서를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힘.

¹ 개발자 생애주기: ①계획·설계 ②데이터 수집·준비 ③모델 개발 ④모델 배포 ⑤점검(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⑥파기
서비스 제공자 생애주기: ①서비스 계획·설계 ②서비스 개발·구축 ③서비스 제공·운영 ④서비스 유지보수·지원 ⑤환류(피드백) 및 서비스 개선 ⑥파기

² AI 챗봇에서 중요정보 유출, AI 기반 음성 비서 도청, AI 챗봇의 악성 링크 배포, AI 얼굴 인식 시스템의 해킹, AI 서비스의 딥페이크 영상 유포, AI를 악용한 사이버 테러 등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안내하고 있음.

02

해외 업데이트

Accountancy Europe, 유럽 회계업계 외부자본 유입 확대에 따른 기회와 리스크 분석

2025년 11월 27일 유럽 회계사 연합인 어카운턴시 유럽(Accountancy Europe)이 유럽 회계감사업계에 사모펀드 등 외부자본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 소유 구조의 특성, 관련 리스크 및 기회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배경

- 회계법인, 특히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은 오랫동안 파트너십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며 전문가 기준에 따라 자체적인 거버넌스를 갖추고 점진적으로 성장해 옴. 이러한 특성이 감사인의 독립성, 전문가적 판단, 공공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함.
- 그러나 지난 10년간 디지털화, 신기술, 새로운 서비스 수요, 경쟁 심화 등 사업환경의 변화로 회계법인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 사모펀드(PE) 등 외부자본 투자가 급증함.

유럽 회계감사 섹터 내 제3자 소유구조 유형으로는 사모펀드(PE), 기업공개(IPO), 직원 소유(staff ownership) 모델, 가족 소유(family ownership) 모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PE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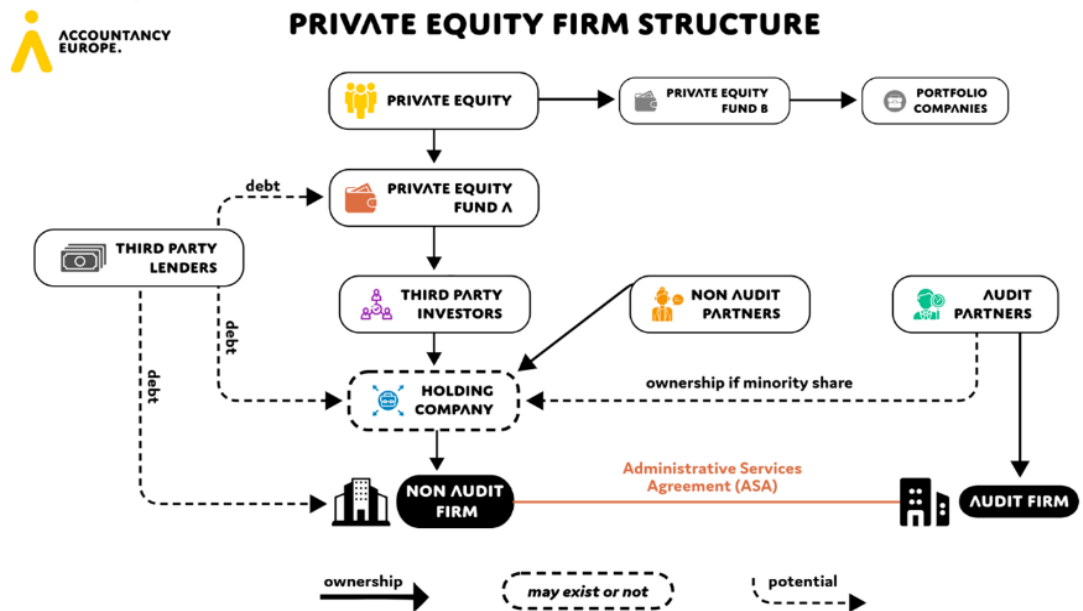
PE의 유럽 회계법인 지분 소유 모델

PE 거래 건수	- 연간 10~20건에 불과하던 PE 거래는 2023년 112건, 2024년 192건으로 급증 2025년에도 대형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됨		
관련 EU 규정	<table border="0"> <tr> <td> - 감사 서비스 제공 회계법인: EU 법에 따라 각 회원국 당국이 법정감사 자격을 부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해야 함 </td><td> - 감사 서비스 미제공 회계법인: EU 차원의 소유권 제한은 없으며, 국가별 규정도 감사법인 대비 대체로 덜 엄격함 </td></tr> </table>	감사 서비스 제공 회계법인: EU 법에 따라 각 회원국 당국이 법정감사 자격을 부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해야 함	감사 서비스 미제공 회계법인: EU 차원의 소유권 제한은 없으며, 국가별 규정도 감사법인 대비 대체로 덜 엄격함
감사 서비스 제공 회계법인: EU 법에 따라 각 회원국 당국이 법정감사 자격을 부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해야 함	감사 서비스 미제공 회계법인: EU 차원의 소유권 제한은 없으며, 국가별 규정도 감사법인 대비 대체로 덜 엄격함		
피투자법인 유형	- 거래 대상의 약 60%는 회계-세무-자문 서비스 법인, 40%는 감사인증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법인 - 즉, EU 규정이 감사부문에 대한 제3자 투자에 제약을 두고는 있으나,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함을 시사함. 다만 40% 중에서도 상장사 등 공익실체(PIE) 감사를 수행하는 법인은 소수에 불과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소유 및 통제
구조

- 감사법인과 비감사법인 분리 및 경영지원용역계약(ASA) 체결: PE는 회계감사법인 투자 시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독립된 두 개의 실체, 즉 감사법인과 비감사법인으로 재편¹함
 - 이후 비감사법인은 통상 경영지원용역계약(administrative services agreement, ASA)에 따라 IT, 인사(HR), 마케팅, 백오피스 등의 전문 서비스 및 자원을 감사법인에 제공함
- 지주회사 설립: PE가 이와 같이 분리된 법인들을 지배하기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음
 - PE가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이 소수일 때: 감사법인이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는 것이 허용됨
 - PE가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이 50%를 초과할 때: 감사법인은 EU 규정²에 따라 감사 파트너의 과반 소유권 확보를 위해 PE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어야 함



<사모펀드(PE)의 유럽 회계법인 지분 소유 구조>
자료: Accountancy Europe

감사인 독립성

- ASA를 통해 PE 소유의 비감사법인이 중앙집중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감사법인은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므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구조임
- 다만 이러한 계약이 항상 독립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음

보고서는 PE가 여러 개의 독립적인 법인을 느슨하게 묶는 방식인 ‘플랫폼 기반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함. 즉, PE가 지주회사나 서비스 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여 중앙 법인으로서 브랜드, 기술 플랫폼,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독립적인 로컬 회계법인들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각 로컬 법인은 법인 소유권, 개별 명칭, 법적 독립성과 전문가적 책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중앙 법인으로부터 IT, HR, 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는 구조를 일컬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감사법인으로부터 비감사법인을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비감사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음.

² EU 외에 영국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외부 투자자와 회계감사 업계의 투자 및 투자 유치 동인에 대해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함.

외부 투자자 → 회계법인 투자 동인	회계법인 → 외부투자 유치 동인
• 높은 고객 유지율¹, 안정적이며 예측가능한 현금흐름 • 특정 법인 인수 후 이를 플랫폼 삼아 다른 소규모 법인들을 통합하는 '인수 후 확장 전략(buy and build approach)' 적용 용이 • 높은 성장 잠재력 및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 기술 투자, 해외 진출, 인수합병 등 성장을 위한 자본 확보 • 기업 운영 및 경영 전문성 보완 • 파트너십 구조에서는 출자를 하거나 퇴직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할 때 재무적 부담이 높으나, 외부 자본을 활용하면 보다 원활한 파트너 승계 가능

이처럼 외부 투자가 활성화되는 데 따른 위험과 기회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회계법인 대상 외부 투자의 위험 요인

- 단기 성과에 대한 PE의 압박으로 인해 공익적 의무가 있는 감사법인이 전문가 기준, 독립성, 장기적 관점 등을 지키기 어려워질 가능성²
- 투자자와 회계법인 간의 문화 차이, 투자자의 재무적 동기와 감사인의 공익적 의무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한 이해상충 관련 윤리 이슈 발생 가능성
-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PIE 서비스를 회피하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만 집중할 경우, 주요 섹터 기업들에 대한 감사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
- PE 투자자의 출구 전략(통상 3~7년 내 투자 회수)이 회계법인의 소유 구조, 사업 연속성, 독립성 등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

회계법인 대상 외부 투자의 기회 요인

- 외부 자본을 통해 AI, 자동화, 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 도입 가능
- 소규모 법인 통합 및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전문성 강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 체계적 인재 개발 프로그램, 전문적 인사관리, 직원 지분 참여 등을 통한 우수 인력 확보·유지
- 투자자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한 혁신의 기회 창출 및 신규 시장 진출 가능성

보고서는 외부 투자가 유럽 전역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회계업계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책입안자, 규제기관, 업계, 투자자 등이 그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함.

¹ 유럽 회계법인의 기존 고객 유지율은 연간 85%를 상회하며, 다수의 EU 국가에서는 감사계약기간이 3~6년으로 의무화되어 있음.

² 실제로 영국 재무보고위원회(FRC), 네덜란드 금융시장청(AFM) 등의 규제당국은 독립성과 감사품질을 위해 PE 거래 전 미리 알릴 것을 촉구함.

EU,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 입법 마무리 수순...CSRD·CS3D 규제 대상 대폭 축소 In Focus

EU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공급망실사지침(CS3D), EU 탄소노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지속가능성 규제를 간소화하는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 I'의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함.

1. CSRD 및 CS3D

2025년 12월 9일 EU의 공동 입법기관인 의회와 이사회가 개정 내용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한 후, 12월 16일 다음과 같은 간소화안을 의회가 정식 [승인](#)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 (본 뉴스레터 2025년 11월호 "EU 의회, 'CSRD-CS3D' 규제 대상 대폭 줄인 입장 채택...연내 입법 마무리 전망" 참고)

규제	적용 대상	주요 간소화 내용
CSRD	- EU 내 기업: - 종업원 > 1000명이고, - 전 세계 순매출 > €4억 5000만 - 비EU 모기업: - 그룹의 EU 내 순매출 > €4억 5000만이고, - EU 자회사·지점의 EU 내 순매출 > €2억 - 금융지주회사는 미적용	- 보고 의무: - 산업별(sector-specific) 보고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 - 종업원 1000명 이하 협력사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집행위가 향후 개발할 자발적 보고기준에서 정한 정보 범위를 초과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없음 -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¹의 필수 데이터포인트를 기존 대비 61% 줄이고 모든 자율 공시 항목을 삭제했으며,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평가를 간소화함 - 인증 의무: 2027년 7월 1일까지 제한적 확신(검토) 수준의 인증기준 개발 예정 - 합리적 확신(감사) 수준의 인증기준 개발 계획 삭제

CSRD의 전신인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을 적용받던 기업은 2025년(FY24)부터 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했으나, 변경된 기준상 제외되는 기업들은 각 회원국 재량에 따라 FY25, FY26 보고 의무를 면제할 수 있게 함. NFRD 미적용 기업은 2028년(FY27)부터, 비EU 모기업은 2029년(FY28)부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2025년 12월 4일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2023년 7월 채택된 12개 ESRS을 간소화한 개정 기준서 초안을 [공개](#)했으며, 집행위는 2026년 중반까지 위임법률을 통해 개정 기준을 채택하고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규제	적용 대상	주요 간소화 내용
CS3D	• EU 내 기업: - 종업원 > 5000명이고, - 전 세계 순매출 > €15억 • 비EU 기업: - 종업원 수와 무관하게, - EU 내 순매출 > €15억	• 실사 범위: -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반해 자사, 자회사, 활동사슬¹ 내 사업 파트너의 운영과 관련해 인권, 환경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영역을 식별하고 심층 평가 - 종업원 5000명 미만 기업에 대한 정보 요청 제한 • 실사 주기: 5년² • 전환 계획: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계획 수립 의무 삭제 • 과징금 상한: 전 세계 순매출액의 3% • 민사 책임: EU 차원이 아닌 회원국 국내법 체계상 민사 책임만 부과 가능

CS3D는 2029년 7월 26일부터 적용되나, 실사 결과 보고 의무는 203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됨.

이와 같은 내용의 CSRD, CS3D 개정 법률은 현재 24개 공식 언어로의 번역 절차 등을 거치고 있어, 2026년 1분기 내 EU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게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발효될 예정임.

2. EU 택소노미(Taxonomy)

1월 28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한 분류체계인 EU 택소노미 규정 개정법이 [발효](#)됨.

CSRD 적용 기업은 자사의 활동 중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활동의 비중 등을 공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무는 2025 회계연도부터 발생하지만 기업 선택에 따라 2026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도 허용됨.

주요 개정사항은 '재무적 중요성(materiality) 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이에 따라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활동은 택소노미 부합 여부 평가 시 제외할 수 있게 됨. 특히 비금융기업은 총매출, 자본지출(CapEx) 또는 운영비용(OpEx) 대비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 중요하지 않은 활동으로 간주함. 또한 보고해야 하는 데이터포인트 수를 비금융기업은 64%, 금융기업은 89% 줄여 간소화함.

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5년 10월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법률이 [발효](#)됨. (본 뉴스레터 2025년 7월호 "EU, 'CBAM' 규제 완화 입법 마무리 단계...전력·수소 제외하고 연간 50톤 미만 수입자는 면제" 참고)

완화된 보고 의무만 부여하는 전환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EU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제3자 검증, CBAM 인증서 구매 등 CBAM에 따른 모든 의무가 본격 시행되고 있음.

주요 개정사항은 전력과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철강)은 연간 50톤(5만 kg) 미만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제하고, 모든 CBAM 품목 수입자를 위한 간소화 조치³를 도입한 것임.

¹ chain of activities: 전체 가치사슬이 아닌, 업스트림 협력사 활동에 더 초점을 맞추고 다운스트림 활동 일부를 제외한 개념

² 단,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사업상 중요한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없이 수행해야 함.

³ 예: 신고자 승인 절차,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내재배출량(제품 생산 시 배출된 탄소 총량으로,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 산출, 배출량 검증 규정, 신고자의 연중 재무적 책임 계산,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에 대한 인증서 감면 청구 절차 등 간소화



ISSB,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 개발 방침...올해 10월 초안 공개 목표

2025년 11월 7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ISSB는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및 S2 '기후 관련 공시'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TNFD) [권고안](#)에 기반해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두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개발 방식 결정

- 신규 기준 개발 vs. 기존 ISSB 기준을 개정하거나 지침을 추가하는 안 등 개발 방식 검토
- 이에 대해 의견수렴 진행하여 개발 착수

COP17에서 초안 공개

- 올해 10월에 개최될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CBD COP17)까지 공개초안 마련

TNFD는 ISSB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기준 제정 작업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또한 전 세계 73개 조직이 이미 TNFD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언급하며, ISSB 기준 제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TNFD 권고안을 활용해 자연 관련 공시를 시작할 것을 권고함. (본 뉴스레터 2023년 10월호 "ISSB, TNFD '자연자본 공시 권고안' 환영... '생물다양성' 등 차기 기준서 제정에 참고 방침" 및 2025년 10월호 "TNFD-EY, 전 세계 'TNFD 공시 현황' 보고서 각각 발표... 아시아 기업이 TNFD 활용 의향 가장 높아" 참고)

한편, ISSB는 IFRS S1 및 S2의 이행 지원 노력도 계속하고 있음. 2025년 12월 11일에는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IFRS S2을 일부 [개정함](#). (본 뉴스레터 2025년 6월호 "기준원,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관련 IFRS S2 개정 공개초안 요약본 공개" 참고)

IFRS S2 주요 개정사항¹

- 스코프 3 카테고리 15²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시 파생상품, 투자은행 관련 특정 금융활동, 보험 및 재보험 인수업무 등과 연관된 배출량 제외 허용
- 금융배출량 산정 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사용 의무 완화
- 온실가스 배출 측정 방법 확대
- 배출량 산정 시 사용 가능한 지구온난화지수 값(global warming potential, GWP) 확대

개정된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도 허용됨.

¹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의 개정초안 [번역본](#)에서 확인할 수 있음.

² 투자 활동에 따른 배출

IPSASB, 정부를 위한 '공공부문 기후 공시기준' 1호 승인... '28년 시행

2025년 12월 5일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IPSASB)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SRS) 시리즈의 첫 번째 기준서인 SRS 1 '기후 관련 공시'를 승인했다고 [발표](#)함.

2024년 10월 IPSASB는 이 기준서의 초안을 발표하고 2025년 초에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5년 1월호 "IPSASB, 정부를 위한 '공공부문 기후 관련 공시기준' 초안 발표...2월 말까지 의견 수렴" 참고)

IPSASB는 의견 수렴 후 단일 기준 내에 ▲기관 자체 운영과 관련된 기후 공시와 ▲기후 관련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성과 관련 공시라는 두 가지 이질적 공시가 혼재되어 있어 복잡하다는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두 단계로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고, 이번에 확정된 SRS 1은 그중 1단계인 기관 자체 운영 관련 공시 기준서에 해당함. 2단계인 기후 정책 성과 관련 기준서는 올해 상반기 중 의견을 수렴해 연내 승인될 예정임.

SRS 1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조기 적용도 허용됨.

IMO, 탄소부과금 채택 논의 1년 연기 결정...트럼프 대통령 반대 부딪혀

2025년 10월 17일 국제해사기구(IMO)가 2027년부터 글로벌 해운시장에 적용되는 '탄소부과금' 제도가 포함된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 채택에 관한 논의를 12개월 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함.

배경

- 2025년 4월 IMO는 2050년경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net zero)' 달성을 목표로 5000톤 이상의 국제 항해 선박에 대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5년 6월호 "IMO, '27년부터 대형 선박 온실가스 배출 제한...해운회사·수입업자·리스 제공자 등에 영향" 참고)

[BBC](#) 등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미 행정부가 자국 선박에 대한 탄소 비용 부과 시 관세 등 보복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BBC는 이번 연기로 인해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도입 일정이 계획대로 유지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도함.

중국, 기업 지배구조 지침 업데이트...이사·고위경영진 감독 강화

1월 1일부터 중국 국무원 산하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중국어)한 '개정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지침'이 시행됨.

이번 개정은 상장회사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배구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사·고위경영진 감독 강화	- 임직(재직 상태), 직무 수행, 퇴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규범화 - 총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이행 명확화
보수제도 정비	성과(회사 및 개인) 연동형 보수 관리 제도 도입 의무화
지배주주·실질 지배자 행위 규율	- 상장사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종업종 경쟁 엄격히 제한 -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심의·의사결정 요건 강화
기존 법·제도와와의 정합성 제고	증권법, 독립이사 제도 등과의 조화 강화

CSRC는 앞으로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법규에 따른 운영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IAASB, 'ISSA 5000' 적용한 지속가능성 예시 인증 보고서 공개

2025년 11월 24일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ISSA 5000'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예시 인증 보고서를 [발표](#)함.

이번 예시 보고서에는 ▲IFRS S1, S2에 부합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인증 ▲지속가능성 보고서 중 일부 선별된 공시 항목에 대한 인증 ▲복수의 공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작성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인증 ▲제한적 확신(검토) 수준의 인증과 합리적 확신(감사) 수준의 인증을 결합한 인증 업무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례가 제시됨. 또한 한정 의견·의견거절·부적정 의견과 같은 의견 변형을 반영한 인증 보고서 예시도 포함됨.

호주, 회계사에 AI 활용 관련 주의 당부...윤리기준 준수 및 AI 사용 사실 공시 요구

2025년 10월 31일 호주 회계전문가윤리기준위원회(APESB¹)가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AI 활용 시 ‘회계전문가윤리기준’(APES 110)²을 준수하고, 서비스 결과물에 AI 사용 사실을 밝힐 것을 당부함.

APESB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의 국제공인회계사윤리기준(IESBA Code) 개정사항²을 반영해 2025년 1월 1일부터 APES 110에 기술에 관한 새로운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함으로써 AI 관련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함. (본 뉴스레터 2023년 5월호 “IESBA, 기술발전 반영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개정 발표...내년 12월 시행” 참고)

최종 책임은 회계사에게

- AI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 정보 생성·요약·해석 시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정보 분석, 그 기초가 되는 전문가적 판단,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계사에게 있음.

AI 생성 콘텐츠의 한계에 유의

- AI가 ‘환각(hallucination)’을 일으켜 그럴듯하지만 부정확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 사용 범위를 신중히 고려하고,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판단을 맡겨서는 안됨.

전문가 윤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AI를 사용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하며, 성실(integrity), 전문적 역량과 주의의무, 전문가적 품위 등 전문가 윤리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AI 사용을 감독·검토해야 함.
 - 밸류에이션, 포렌식, 기업재무 등의 서비스 제공 시 APESB의 서비스별 기준에 따라 보고서 작성에 사용한 방법론 및 정보 출처를 공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AI 및 AI 생성 정보 사용 사실도 포함됨.

APESB는 또한 AI 등 기술 활용에 대한 추가 지침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존 기준 및 지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¹ Accounting Professional & Ethical Standards Board

²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재편되고 있는 업무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을 자동화된 툴 및 기법(ATT),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블록체인, 미래 기술 등을 포함한 모든 기술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회계사의 기밀유지, 적격성, 주의의무 등의 준수에 있어 ‘기술’과 관련해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EU 등 전 세계적으로 SNS 연령 제한 도입 움직임 확산

2025년 12월 10일부터 호주가 세계 최초로 모든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함.

2024년 11월 16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각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한 이래, 약 1년의 경과 기간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 (본 뉴스레터 2025년 1월호 “호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 SNS 이용 금지...이르면 ‘25년 말 시행 예상” 참고)

이 법은 유해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무한 스크롤 등 중독을 유발하는 SNS 플랫폼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age-restricted social media platform, ARSMP)’으로 간주됨¹. - 온라인상 2명 이상의 이용자 간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일한 목적 또는 주요 목적으로 함 - 다른 이용자와의 연결 또는 상호작용을 허용함 - 이용자가 플랫폼에 자료를 올릴 수 있음 - 호주 내 이용자가 플랫폼에 올려진 자료에 접근할 수 있음 12월 10일 기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스레드, 틱톡, 트위터, 엑스(구 트위터), 유튜브, 킥, 레딧 등 10개 플랫폼이 ARSMP로 지정되어 있으며, 향후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의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ARSMP의 의무	- ARSMP 사업자는 온라인안전위원회의 규제 가이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해야 함. 16세 미만 아동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계정을 파악해 비활성화하거나 삭제할 것 16세 미만 아동이 신규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방지할 것 - 연령 제한 조치를 우회하는 편법을 차단할 것 - 특정 이용자가 제한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포함된 경우 정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출 것
과징금	의무 미이행 시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9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메시지 교환, 온라인 게임, 건강 및 교육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이번 SNS 연령 제한 규제의 초기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1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12월 전반에만 약 470만 개의 16세 미만 아동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삭제되었음. 위원회는 연령 인증의 정확성 및 효과성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아직 차단 조치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안전 법규와 마찬가지로 관련 위험이 감소하고 문화적 규범이 재정립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힘.

또한 각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는 ARSMP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함. 온라인 서비스가 매우 많고 기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ARSMP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서비스를 모두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호주 내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플랫폼들에 규제·감독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다른 국가들도 호주의 선례를 따라 아동의 SNS 이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주요국 현황은 다음과 같음.

유럽 (EU 및 개별 회원국 차원)

- **EU 차원:** 2025년 11월 EU 의회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 동영상 공유 플랫폼, AI 컴패니언 (companion)² 이용을 금지(단, 13세부터는 부모 동의 시 허용)하는 규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함.¹
- **개별 회원국:**
 - 대표적으로 덴마크가 2025년 11월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단, 13세부터는 부모 동의 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후 입법 절차를 진행 중임.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유사한 조치를 논의 중이며, 특히 프랑스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함.

미국 (주 차원)

- 2025년 10월 기준 8개 주(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오하이오, 테네시)가 특정 연령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거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을 도입했으나, 다수의 주가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위반을 근거로 한 소송에 직면해 있음.

아시아 (개별 국가)

-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접속을 금지함.

우리나라 또한 국회에 청소년의 SNS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며, 메타(페이스북), 구글(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작년부터 자율적으로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¹ EU 차원의 입법은 대부분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발의하고 의회 및 이사회가 협의를 통해 이를 공동으로 수정·채택하는 절차로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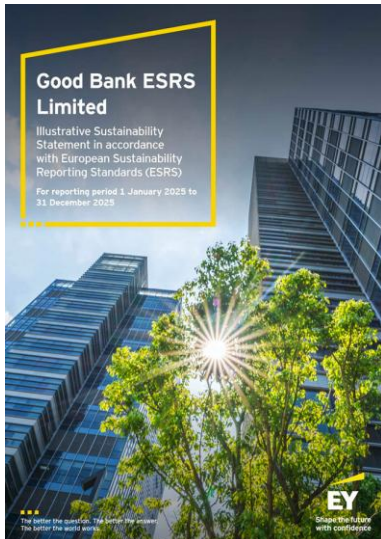
² 반복적·지속적 대화를 통해 인간과 친구처럼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AI 시스템을 뜻함.

03

주목할 간행물



EY: Good Bank ESRS (International) Limited



EY가 발행한 본 보고서는 은행업계의 예시 지속가능성보고서로 금융사들이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에 따른 공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됨.

Good Bank ESRS (International) Limited라는 가상의 모회사를 보고실체로 가정하였으며, 그 자회사인 은행들이 연결 대상으로 포함됨.

이를 통해 은행이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어떻게 식별하고 공시할 수 있는지 보여줌.

EY: How integrated reporting can give you the whole story



영국 기업 경영진 2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Y가 발행한 이 보고서는 통합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국 기업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의 71%가 완전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조직의 성과, 위험, 회복탄력성 및 가치에 대해 보다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비재무 보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무·비재무 데이터를 결합한 통합 공시(Integrated Reporting)가 비즈니스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함.

OECD: Global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20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중 지속가능성 관련 권고사항과 실제 시장 관행을 비교해 2024년부터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 2025년 판이 공개됨. (본 뉴스레터 2024년 4월호 “OECD, 전 세계 4만여 개 상장사 분석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 첫 발행” 참고)

2024년 전 세계 4만여 개 상장사 중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한 기업의 비율은 시가총액 기준 91%로, 2022년 86%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시총 기준 81%가 독립적인 제3자의 인증을 받아 2022년 66%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공시된 지속가능성 정보를 누가 인증했는지 명시한 경우 54%(기업 수 기준)는 회계법인이 인증한 것으로 확인됨.

이사회가 기후 관련 문제를 감독하는 비율은 시총 기준 2022년 53%에서 70%로 증가했으며, 임원 변동보수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연계한 기업 비율 또한 60%에서 67%로 상승함.

보고서는 이 밖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기업과 녹색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에너지 부문 심층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함.

EY: What is the agenda for reimagining more strategic, future-looking boards?



EY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글로벌 기업 이사회가 직면한 리스크를 조명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미래지향적인 이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글로벌 대기업 이사회에서 각각 활동 중인 비상임이사 21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대다수가 과중한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운영 전반을 감독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래 전략을 고민할 시간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함.

보고서는 이제는 단순히 시간을 더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업무 효율성 평가 및 개선 ▲형식적 수준의 이사회 운영 탈피 및 내실화 ▲과거 지향적 데이터에 대한 과신 경계 및 미래 통찰력 강화 ▲독립적·비판적 사고 강화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단순화 및 효율화¹ ▲AI 활용 등을 제시함.

¹ 예: 정책, 표준, 프로세스, 조직-거버넌스 통제 메커니즘 전반에서 글로벌 일관성을 추구하되, 필수적인 수준의 로컬 적합성을 고려하는 원칙 중심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도입

EY: Decoding the EU Digital 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

(별첨)



2025년 11월 EY 집행위원회가 EU 인공지능법 등 디지털 규제 간소화(Digital Omnibus)를 위한 법안 패키지를 공개함. (본 뉴스레터 2025년 11월호 “EU 집행위,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인공지능법 등 디지털 규제 간소화” 참고)

EY Global은 관련 기업들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법 및 기타 디지털 규정(예: 데이터법, 개인정보보호체계, 사이버보안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절차 등을 정리한 자료를 발간함.

EY: How can responsible AI bridge the gap between investment and imp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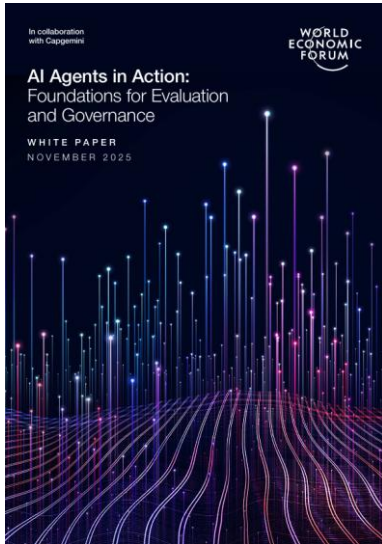
EY가 2025년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인도 및 아프리카에 걸친 21개국에서 조직 내 AI와 관련한 일정 정도 이상의 책임이 있는 C 레벨 경영진 975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AI와 관련된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실제로 이행하며 강력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책임있는 AI’를 실천하는 조직이 매출 성장, 비용 절감, 직원 만족도 면에서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고서는 책임있는 AI는 ▲소통(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AI 원칙을 명확히 제시) ▲실행(해당 원칙을 통제, 핵심성과지표,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 ▲거버넌스(담당 위원회 구성, 독립적인 감사 등을 통한 감독) 등 세 단계를 거쳐 구축된다고 설명함.

C 레벨 경영진이 AI 거버넌스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AI를 형식적 관리가 아닌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C 레벨 경영진의 AI 이해를 높이며 ▲AI 에이전트, 특히 직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¹ AI 에이전트의 이점만 볼 것이 아니라 관련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¹ 코딩을 몰라도 앱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노코드(no-code)·로코드(low-code)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개발하는 경우

WEF: AI Agents in Action: Foundations for Evaluation and Governance



최근 AI 에이전트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설계하고 테스트하며 책임있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부족한 상황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행한 이 보고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AI 도입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보고서는 조직 내 워크플로우와 서비스에 AI 에이전트를 통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의 기술적 기반(아키텍처, 프로토콜, 보안 관련 고려사항 등) ▲기능 기반 분류 체계(역할, 자율성, 권한, 예측가능성, 운영환경에 따른 분류) ▲차등적 거버넌스(에이전트의 자율성, 권한, 복잡성에 비례해 감독 및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접근법) 등을 설명하고 있음.

Partnership on AI: Preparing for AI Agent Governance



AI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파트너십인 'Partnership on AI'²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AI 에이전트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책입안자들은 AI 에이전트 관련 규제를 서두르기보다는 샌드박스,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함.

보고서는 AI 에이전트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정책 환경 ▲관련 기회 및 리스크 ▲정책 개입 수단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연구 의제를 12개의 개괄적 질문과 45개의 하위 질문으로 구성해 제시함.

¹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며 디지털 환경과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된 자율 시스템. 이는 AI 활용에 있어 거대언어모델(LLM)에서 한발 더 나아간 기술로 볼 수 있음.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은 사용자가 AI를 더욱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현재의 거버넌스 체계로는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음. 즉, 강력한 감독 체계 없이는 규제를 위반하거나 예측불가능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설령 해당 에이전트 소유자가 특정 행동을 승인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소유자에게 법적 책임을 안겨줄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도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음.

²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I 관련 기업뿐 아니라 EY, 우리나라 인공지능안전연구소 등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파트너십으로 AI 관련 지침, 권고안 등을 개발하고 적용 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담당자 안내

EY한영 Public Policy팀

이동근 부문대표 (파트너)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대표, Public Policy 리더

dongguen.lee@kr.ey.com

Public Policy 뉴스레터 편집팀: 김양희 팀장, 권혜숙 차장, 강태은 과장

EY한영 ESG Impact Hub

박재흠 파트너

EY한영 ESG Impact Hub 리더, 감사부문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리더

jaeheum.park@kr.ey.com

뉴스레터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품질관리실 회계기준 김동길 파트너 품질관리실 감사기준 및 제도 정연웅 파트너

I 제작 EY한영 Public Policy 팀 (ey.pp.team@kr.ey.com)

I 뉴스레터 구독 신청 담당 EY 파트너 문의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6 EY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